

EIM 운동비용 보험 환급 안내

Exercise
is Medicine®

1. 2023년 3월 미국 국세청(IRS)은 내부수입법 제213조에 관한 추가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영양과 웰니스, 일반 건강에 관련된 일부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되어 건강저축계좌(HSA), 유연지출계좌(FSA), 아처 의료저축계좌(Archer MSA), 건강환급약정(HRA)으로 지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2. HSA, FSA, 아처 MSA, HRA로 일부 신체활동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 의료비여야 합니다 — 몸이나 마음의 장애·질병을 덜기 위한 것에만 씁니다
 - 의료 행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몸의 구조나 기능에 작용해 질병을 진단·치료·완화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

- 현재로서는 질병의 치료가 인정 대상이며,

질병 예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 질환이 없었다면 수급자가 그 신체활동 비용을 쓰지 않았을 것이어야 하며, 진단 전에는 하지 않던 활동이어야 합니다(3c 참고). 새로 진단받은 질환이어야 하며, 이미 있던 진단으로는 안 됩니다.

3.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우울증 등을 진단한 뒤,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지도 아래의 운동치료나 근거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 운동시설 회원권을 처방해야 합니다(스포츠 리그나 정식 무용 수업은 안 되지만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이 혜택을 쓰려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학적 필요 소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소견서에는 그 질환이 없었다면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만이 있는 사람에게 고혈압이 **새로 진단**된 경우
- 이미 비만이나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에게 당뇨병 전단계나 제2형 당뇨병이 **새로 진단**된 경우
- 다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유방암이 **새로 진단**된 경우
- 소견서에는 그 비용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위한 것임을 가려 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4.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5. 의료인은 치료가 계속 필요하지 판단하기 위해 매년 환자를 다시 평가해야 하며, 의학적 필요 소견서도 매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6. 고용주와 보험자에게 이 국세청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 이 혜택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신청 기간과 신규 입사 안내 때 함께 알리기를 권합니다. 근로자는 복리후생 담당자나 부서에 이 혜택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환자는 본인의 HSA·FSA·HRA 계좌 규정을 살펴 신체활동 관련 비용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IM 운동비용 의학적 필요 소견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환자 이름
- 구체적인 진단명과 필요한 치료
 - 권고하는 치료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적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환자의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운동시설 회원권을 통한 운동 프로그램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 치료 기간
 - 의료인이 구체적인 치료 기간을 정해 줄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의학적 필요 소견서(LMN)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 치료가 적힌 기간을 넘어 이어진다면, 가입자는 새 기간을 담은 소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견서는 1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4.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소견서
 - 의료인의 공식 서식 용지를 써야 합니다
 - 처방전 용지에 적어도 됩니다
 - 퇴원 서류의 일부로 넣어도 됩니다
 - 전자의무기록에 상용구로 넣어 쓸 수 있는 소견서 예시는 [이 링크](#)에 있습니다.
 - 소견서는 HSA·FSA·HRA 또는 아처 MSA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 구매일이나 진료일은 소견서를 받아 승인된

뒤여야 합니다.